'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이성윤·민형배·이건태

김용민 · 주철현 · 김현정

김문수 • 박균택 • 한민수

장경태 · 노종면 · 양부남

김기표 · 김동아 · 박선원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주)쌍방울 전 회장 김성 태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하였음. 범죄 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김성태에게 낮은 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검 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김성태와는 구형 관련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함께 김성태가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추 가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한편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의 변호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중인 이화영을 200여회 소환하였음에도 극히 일부만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이화영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도 '고위직 검사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회유를 위해 접촉하여,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이화영 등이 함께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주류를 반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검찰이 이화영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의혹이제기되고 있음.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됨.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대북송금 관련 주가조작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김성태와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횟수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하였다는 의혹, 수사과정에서의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각 호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 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30명이내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직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30명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 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

조).

-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 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자. 검사, 검찰청 직원,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이 안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안 제23조).
- 차. 안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수사 기관에 범죄를 자수 또는 자백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 제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 1. 2018년 및 2019년경 (주)쌍방울의 전 회장 김성태와 아태평화교 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 가. 김성태의 주가조작 등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부실수사하고 김성태와 구형 관련 거래를 하였다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의혹 사건
 - 나. 검찰이 구속 중인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을 수원지방검찰청에 200여회 소환하였음에도 극히 일부만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고 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이화영에게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에서 약속했다'며 회유 및 협박을 하는 등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사건

- 다. (주)쌍방울의 성명불상 직원 등이 2023년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서 김성태에게 주류 등을 전달하여 금지물품을 반입하였다는 의혹사건
- 2. 제1호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행한 피의사실공표 의혹사건
- 3. 제1호와 제2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 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 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

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받은 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화·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 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 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직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과직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30명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 사건의 수사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과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별검사등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며, 그 사유를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

- 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주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 4.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5.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하다.
-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② 제1항의 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재판을 특정한 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

- 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등,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나 직원,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특별검사등,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나 직원,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과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검찰청 및 법무부 직원의 고발의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와 검찰청 직원,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직원은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특별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24조(자수·자백에 대한 특례)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제9조에 따른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에 범죄를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5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